

2024년도 1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

2024. 4.

감사위원회

1. 개요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7항

“신고 접수현황에 대해 시장은 월별로, 위원회와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고 대상

- 기 간 : 2024. 1. 1. ~ 3. 31.(2024년 1분기)
- 대 상 :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온라인(시장 핫라인) 및 오프라인(우편, 방문 등)으로 공식 접수된 공익제보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서 이첩된 공익제보 등

접수결과

- 2024년 1분기 총 59건 접수

[표 1] 2024년 1분기 창구별 접수현황

(단위 : 건)

접 수	창 구	합 계	1월	2월	3월
공 익 제 보	공직자비리신고	31	9	11	11
지 원 센 터	공 익 신 고	25	7	3	15
국민권익 위 원 회	국 민 신 문 고	3		2	1
합	계	59	16	16	27

2. 제보경로 및 발생기관 분석

□ 제보 경로 분석

[표 2] 제보 경로별 접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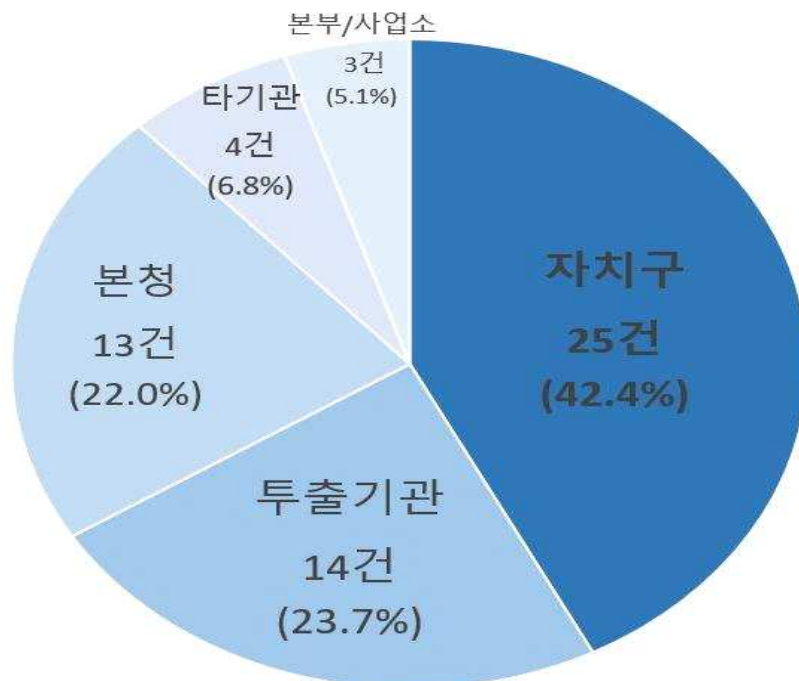
(단위 : 건)

경로	합 계	공익제보지원센터		국민권익위원회
		온 라인 PC/모바일	오프라인 우편/방문/팩스	국민신문고 시스템 연계/이첩
접수건수	59 (100%)	56 (94.9%)	-	3 (5.1%)

*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통합 민원 창구임

□ 접수 제보별 소관사무 분석

- 자치구 소관 사무 관련 제보가 25건(42.4%)으로 가장 많았음
 -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신고 대상 법률과 관련한 공익신고 10건
 - 자치구 직원 복무 등의 부패 신고 15건
- 본청 소관 사무 제보 13건(22.0%), 본부/사업소 소관 3건(5.1%)
 - 본청의 경우 공익신고 4건, 부패신고 8건, 기타민원 1건
 - 본부/사업소의 경우 공익신고 1건, 부패신고 2건
- 그 외에 시 투자출연기관 소관 제보가 14건(23.7%), 타기관 4건(6.8%)
 - 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공익신고 1건, 부패신고 12건, 기타민원 1건
 - 타기관 4건은 서울시청 외 소관민원



3. 공익제보 분류

□ 제보내용의 분류

○ 접수된 59건 재분류 결과, 공익제보 요건에 부합하는 제보는 57건

[표 3] 접수 공익제보 재분류 결과

(단위 : 건)

총계	공익제보 해당 57건(96.6%)		일반민원/기타
	부패신고	공익신고	
59 (100%)	41 (69.5%)	16 (27.1%)	2 (3.4%)

* 청원/제안/건의/항의 등 일반민원 성격 제보는 공익제보로 보기는 어려우나, 공익제보 처리에 준하여 접수 답변하고 있음

※ 조례상 ‘공익제보’ 해당 신고 범위

구분	개요	신고 대상 행위
부패 신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부패행위”신고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2호의 재산상 손해는 1호의 사익도모에 의한 부패행위 유형과 균형을 이루는 정도의 행위인 경우이며 단순 부주의나 직무소홀은 제외(판례)
공익 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정의) “공익침해행위”신고	식품위생법,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491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정한 직무수행(직무수행 기본자세 등),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등 서울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위반 행위

4. 공익제보 내용 분석

□ 공익제보 세부내역(총 57건)

○ 부패신고 : 41건

[표 4] 재분류 결과 부패신고 해당 내용

(단위 : 건)

구분	소관기관	건수	내 용
업 무 부 적 정	본 청	5	업무 추진 과정 중 부당행위
	본부·사업소	1	
	자 치 구	11	
	투자출연기관	8	
	타 기 관	2	
	소 계	27	
불 공 정 행 위	본 청	1	입찰이나 채용, 인사과정의 불공정행위나 정책 추진상의 특혜제공 의심
	본부·사업소	-	
	자 치 구	4	
	투자출연기관	1	
	소 계	6	
복 무	본 청	2	초과근무/출장 부정행위, 직무 태만, 품위유지 위반 등
	본부·사업소	1	
	자 치 구	-	
	투자출연기관	3	
	타 기 관	2	
	소 계	8	
총	계	41	

*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 포함

○ 공익신고 : 16건

[표 5] 재분류 결과 공익신고 해당 내용

(단위 : 건)

구 분	소관기관	건수	내 용
의 료 법	자 치 구	4	의원의 의료법 위반 의심
건 설 산 업 기 본 법	본 청	2	건설업등록 관련
건 축 법	자 치 구	2	건설폐기용수 무단방류 등
건 설 기 술 진 흥 법	본 부 / 사 업 소	1	부적정 건설자재 납품 관련
공 동 주 택 관 리 법	자 치 구	1	아파트 수해복구 공사 관련
근 로 기 준 법	자 치 구	1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도 로 교 통 법	자 치 구	1	통학버스 주정차 관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자 치 구	1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관련
소 방 시 설 법	본 청	1	불법적치물 관련
장 애 인 복 지 법	본 청	1	복지관 시설운영 관련
철 도 안 전 법	투 자 출 연 기 관	1	철도안전 관련
총 계		16	

*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 적용 법령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조례의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에 따라 세부내용은 나타내지 않음

5. 처리 및 조치 결과 (2024. 3. 31.기준)

□ 처리 내역(총 59건)

[표 6] 접수제보 처리 현황

(단위 : 건)

총계	처리완료(2)		내부종결(18)				진행중 (39)
	처분 (조치)	개선 등	해당없음	권한없음 (직접제보안내)	중복 등 (중개불충분, 보완요구 등)	취하	
59	1	1	5	5	4	4	39

※ 개선 : 구두경고, 주의촉구, 개선약속, 계도 및 그 외 행정지도 등 포함

※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 필요 시 연장 가능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5항

□ 처분(조치) 내역

[표 7] 공익제보 조치 결과(요구 포함)

(단위 : 건)

연번	신고구분	신고 내용	처분기관	조치 내역
1	부패	투출기관 직원 복무 관련	투자출연기관	훈계, 환수